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령 공포

- 대통령령 제14,495호(1994. 12. 31) -

○ 주요골자

가. 식품영업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식품제조·가공업에 28종의 세부 업종을 두고 있었으나 이를 통폐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종(1종)으로 함(령 제7조제1호).

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고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판매업종에 건강보조식품판매업을 신설함(령 제7조제5호나 목).

다. 종전에는 식품영업의 허가를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식품첨가물제조업과 식품조사처리업만 특별시장·직할시장·도시사가 허가하도록 하고, 나머지 모든 업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도록 함(령 제10조 및 제53조).

라.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농어민이 신고만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은 전통식품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령 제13조제3호).

마. 식품영업자의 매출액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령 제38조 및 별표 1).

바. 식품 등의 생산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산정기준을 정함(령 제54조 및 별표 2).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항 제2호 및 제4호 중 “식품제조가공기사”를 각각 “식품제조기사”로 하며, 동항 제3호중 “의학·약학”을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으로, “농화학·식품가공학”을 “농화학·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으로 한다.

제6조제4호중 “임검”을 “출입·검사”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첨가물제조업”을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제7조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의 (5)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 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제5호나목의 (7)중 “(1) 내지 (6)”을 “(1) 내지 (7)”로 “기구·용기”를 “용기”로 하여, 이를 동목의 (8)로 하며, 동목에 (7)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보조식품판매업: 건강보조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식품(이하 “건강보조식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건강보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가 판매원을 두고 자기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제7조각호의 영업중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제4호의 식품운반업, 제6호의 식품보존업과 제8호의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 또는 농어민생산자단체가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2.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업·제분업의 등록을 하여 당해영업을 하는 경우

3. 수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유(간유)제조업·선상수산제조업(어간유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4. 인삼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홍삼류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5.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동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다.

제11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농어민 등”이라 한다)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조건부영업허가의 대상)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은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 제조업 및 동조제8호가목의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제15조(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외의 경우를 제외한다),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및 동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종류별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종식품위생관리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1. 상시 2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

2. 통조림 또는 병조림을 제조하는 영업자

3. 우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유가공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영업자

4.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식육제품”이라 한다)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5.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

6. 유아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식품원료에

영양소를 가감한 식품(이하 “특수영양식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영업자

7. 인삼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영업자

8.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②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외의 경우를 제외한다), 동조 제2호의 증석판매 제조·가공업 및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업자외의 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종식품위생관리인에 갈음하여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관리인에 갈음하여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자에 대한 사전 위생교육을 말한다)을 이수한 자를 둘 수 있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 중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안에 위치하여 농·수산물을 절이거나 줄여서 제조하는 식품류(이하 “절입식품류”라 한다) 또는 면류(라면등의 인스탄트면류를 제외한다)를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2. 증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

3. 상시 5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

4.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제1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첨가물제조업중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식품공학·식품공학·식품화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수산공학(수산물을 원료로 한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2. 식품제조·가공업중 유가공품 및 식육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만,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수의학·식품공학·식품공학 또는 축산공학 분야의 학과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련 과목을 이

수하여 졸업한 자

3. 식품제조·가공업중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식품공학·식품공학·식품화학·농화학·화학·영양학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이거나 식품제조기사·영양사 또는 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있는자

4.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 등) 집단급식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대하여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2.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허가면적이 120제곱미터이상인 업소. 다만, 식사류를 조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중 “40인”을 “60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련학회 또는 단체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38조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42조본문중 “법 제71조제3항제5호”를 “법 제71조제3항제6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30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

65조, 법 제69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5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④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4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중 건강보조식품제조업과 특수영양식품제조업에 관한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 허가권자로부터 당해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용유지제조업(즉석압착식용유)과 식품가공업(임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허가권자로부터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식품의 종류와 유형을 명시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법령의 개정) 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나목에 규정된 유흥접객업”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 규정된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다.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 전의 최근 3월의 총매출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최근 3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등 급	연간매출액 (단위: 백만원)			1일과징 금액 (단위: 원)	
	식품 및 첨가물 제조 가공업외의 영업정지	식품 및 첨가물 제조 가공업의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1		5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60,000
2	50초과~	1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100,000
3	100 초과~	150 이하	200 초과~ 31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140,000
4	150 초과~	210 이하	310 초과~ 43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180,000
5	210 초과~	270 이하	430 초과~ 56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220,000
6	270 초과~	330 이하	560 초과~ 700 이하	500 초과~ 650 이하	260,000
7	330 초과~	400 이하	700 초과~ 860 이하	650 초과~ 800 이하	300,000
8	400 초과~	470 이하	860 초과~ 1,040이하	800 초과~ 950 이하	340,000
9	470 초과~	550 이하	1,040초과~ 1,240이하	950 초과~ 1,100이하	380,000
10	550 초과~	650 이하	1,240초과~ 1,460이하	1,100초과~ 1,300이하	410,000
11	650 초과~	750 이하	1,460초과~ 1,710이하	1,300초과~ 1,500이하	440,000
12	750 초과~	850 이하	1,710초과~ 2,000이하	1,500초과~ 1,700이하	470,000
13	850 초과~	1,000이하	2,000초과~ 2,300이하	1,700초과~ 2,000이하	500,000
14	1,000초과~	1,200이하	2,300초과~ 2,600이하	2,000초과~ 2,300이하	530,000
15	1,200초과~	1,500이하	2,600초과~ 3,000이하	2,300초과~ 2,700이하	560,000
16	1,500초과~	2,000이하	3,000초과~ 3,400이하	2,700초과~ 3,100이하	590,000
17	2,000초과~	2,500이하	3,400초과~ 3,800이하	3,100초과~ 3,600이하	620,000
18	2,500초과~	3,000이하	3,800초과~ 4,300이하	3,600초과~ 4,100이하	650,000
19	3,000초과~	4,000이하	4,300초과~ 4,800이하	4,100초과~ 4,700이하	680,000
20	4,000초과~	5,000이하	4,800초과~ 5,400이하	4,700초과~ 5,300이하	710,000
21	5,000초과~	6,500이하	5,400초과~ 6,000이하	5,300초과~ 6,000이하	740,000
22	6,500초과~	8,000이하	6,000초과~ 6,700이하	6,000초과~ 6,700이하	770,000
23	8,000초과~	10,000이하	6,700초과~ 7,500이하	6,700초과~ 7,400이하	800,000
24	10,000초과~		7,500초과~ 8,600이하	7,400초과~ 8,200이하	830,000
25			8,600초과~ 10,000이하	8,200초과~ 9,000이하	860,000
26			10,000초과~ 12,000이하	9,000초과~ 10,000이하	890,000
27			12,000초과~ 15,000이하	10,000초과~ 11,000이하	920,000
28			15,000초과~ 20,000이하	11,000초과~ 12,000이하	950,000
29			20,000초과~ 25,000이하	12,000초과~ 13,000이하	980,000
30			25,000초과~ 30,000이하	13,000초과~ 15,000이하	1,010,000
31			30,000초과~ 35,000이하	15,000초과~ 17,000이하	1,040,000
32			35,000초과~ 40,000이하	17,000초과~ 20,000이하	1,070,000
33			40,000초과~	20,000초과~	1,100,000

과태료의 부과금액(제54조 관련)

구 분	근 거 법 령	위 반 사 항	과태료액
가	법 제26조제1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0만원
나	법 제26조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 종업원의 수가 5인이상인 경우 (가)대상자의 50%이상 위반 (나)대상자의 50%미만 위반 (2) 종업원의 수가 5인미만인 경우 (가)대상자의 50%이상 위반 (나)대상자의 50%미만 위반 ◦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50만원 30만원 30만원 20만원 30만원
다	법 제27조제1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0만원
라	법 제27조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종업원의 수가 5인이상인 경우 (가)대상자의 50%이상 위반 (나)대상자의 50%미만 위반 (2)종업원의 수가 5인미만인 경우 (가)대상자의 50%이상 위반 (나)대상자의 50%미만 위반	30만원 20만원 20만원 10만원
마	법 제28조제4항	◦ 식품위생관리인 선·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0만원
바	법 제29조제2항	◦ 식품 및 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0만원
사	법 제57조제1항 및 제3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시설의 개수명령에 위반한 영업자 ◦ 시설의 개수명령에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	50만원 30만원
아	법 제67조제1항	◦ 식품등에 의한 식중독 환자 등을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	50만원
자	법 제69조제1항	◦ 집단급식소 설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50만원